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1. 개정이유

- 「민사소송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71호, 2018. 1. 31. 공포 및 시행)으로 등기소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등기 판결서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1.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2. 판결서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2018. 3. 26.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의 경우)’ 으로 규정함(안 5. 라. 1) 다) 신설)

## 3.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붙임과 같음

##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라. 1)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기록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확인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기록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2. 판결서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2018. 3. 26.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의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5. 첨부서면</p> <p>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p> <p>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p> <p>가) (생략)</p> <p>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u>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u>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lt;신설&gt;</u></p>	<p>5. 첨부서면</p> <p>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p> <p>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p> <p>가) (생략)</p> <p>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u>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기록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u>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u>다)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확인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기록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3</p>

항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을 통  
하여 확인

2. 판결서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  
민등록번호로 확인(2018. 3. 26.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의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 락 처	(02) 3480-6044